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6호 소개

□ 최신 세계헌법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유명인사의 과거 비행에 관한 보도의 허용성> 사건은 법원의 보도금지 판결로 인하여 잡지 출판인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보도 금지가 내려진 기사는 유명 기업인이 수십 년 전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시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언론의 보도이익과 당사자의 인격이익을 형량하여야 한다고 실시하면서 형량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시간의 경과, 당사자가 대중에 알려진 정도, 공표된 정보의 내용, 정보원, 정보의 인터넷 검색 가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언론의 보도이익이 시간의 경과로 무조건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당사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이나 보도된 사실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언론의 보도이익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혐의보도의 온라인 게시 허용성> 사건은 거액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청구인이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보도를 온라인에 장기간 열람 가능하게 한 것이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록의 허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본래의’ 보도기사의 허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혐의 상태에 대한 기사는 그 보도 당시에 고도의 ‘보도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혐의에 관한 기사가 본래 보도 당시 높은 보도이익이 인정되었고, 인터넷에 게시하여 장기간 열람 가능하게 한 것 또한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성적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으로 인한 고용차별 금지>

사건은 성별 등을 근거로 직장에서의 차별을 금지한 미국의 1964년 민권법 (Civil Rights Act) 제7장에서의 ‘성별’에 성적지향이나 젠더 정체성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연방대법원은, 동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임을 이유로 한 차별은 필연적으로 ‘성별 때문에’ 개인을 고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되므로, 문리적 해석에 입각할 때 민권법 제7장에서의 ‘성별’에는 성적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관 6인의 다수의견). 이에 대해서는 법률제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 법률문언의 해석을 강조한 대법관 2인의 반대의견 및 사법 소극주의를 근거로 한 대법관 1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보건비상사태를 연장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 사건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보건비상사태 연장 등을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건비상사태를 2021년 2월 16일까지 연장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입법자가 전염병의 확산세와 계절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비상사태 기간을 예측한 것이 현저히 부당한 입법재량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 또 코로나19 감염자 및 접촉자에 대한 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칙 적용을 2021년 4월 1일까지로 연장한 법률조항에 관하여는, 2020년 5월 11일 이미 헌법재판소가 내린 특칙 조항에 대한 판단을 원용하여 동일하게 해석유보부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개인정보의 엄격한 비밀유지를 위하여 규제당국이 정보관리체계 전반을 관리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밀유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외국인 추방에 관한 절차적 보장> 사건은 루마니아에 거주하던 파키스탄인들이 테러리스트 집단의 활동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루마니아 법원에서 위험인물로 지정되고 추방 결정을 받자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한 사건입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추방 이유를 고지받을 권리 및 기밀문서에 접근할 권리가 유럽인권협약 제7 추가의정서 제1조에서 보장하는 절차적 기본권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혐의 사실은 비밀 등급으로 지정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제공되지 않았고, 변호인들도 문제된 비밀 등급 문서에 대한 접근권이 없었으며, 루마니아 법원이 해당 문서의 신빙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심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유럽인권협약 제7 추가의정서 제1조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 세계헌법재판기관 소개

상투메프린시페 헌법재판소를 소개하였습니다.

□ 언론 속의 세계헌법재판 및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

2020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언론 기사 속에 비친 세계헌법재판에 관한 소식을 모아 놓았습니다.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에서는 최신 학회지에 실린 세계헌법재판관련 논문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 국외통신원 소식

일본 통신원 소식으로 소개된 <동일본대지진 당시 오오카와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아동들의 사망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은 동일본대지진 직후 교사들이 학생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게 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학생들이 쓰나미에 휩쓸려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학부모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소개하였습니다. 법원은 교사 등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하였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구체적인 주의의무 내용을 다르게 구성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지진 발생 후 학생들을 안전한 장소인 뒷산으로 대피시켜야 할 의무’를 교사들의 주의의무로 본데 반해, 2심 법원은 지진 발생 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적절한 위기관리매뉴얼을 작성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단지 교사 개인의 의무가 아니라 ‘학교조직상의 주의의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10일 최고재판소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2심 판결의 취지에 따른 국가배상청구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멕시코 통신원 소식으로 소개된 <고위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한 특권 박탈과 관련한 멕시코 헌법 개정>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무원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 개정안을 소개한 글입니다. 현행 멕시코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가배반행위와 중범죄의 경우에만, 다른 고위공직자들은 헌법·연방법률 위반 등 열거된 범죄의 경우에만 임기 중 형사소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 공권력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자 하는 멕시코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고위공무원의 임기 중 기소 가능한 범죄에 부정부패 및 선거법위반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하원을 통과하였고, 앞으로 상원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